

1.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및 변경 인증(안 제2조, 안 제3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안 제4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포함사항(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8. ~ 12. 28.)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예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 방안 포함)
2. 정관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의 변경 및 추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사무실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수단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보험 계약 갱신: 보험증서 사본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실

2.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3.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산정기준

4.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 절차를 포함한다)

5.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6.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수단 및 최대 배상 한도

8.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와 검열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공개

제5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인증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5.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6.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근로자(이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근로자의 규모,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 이용료 등
2.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사서비스 시장 현황,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제공기관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제공기관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제공기관의 대표자에게 알리고, 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및 법인명칭			②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⑧손해배상 수단					
인적 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⑨대표자				
	⑩임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정관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다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유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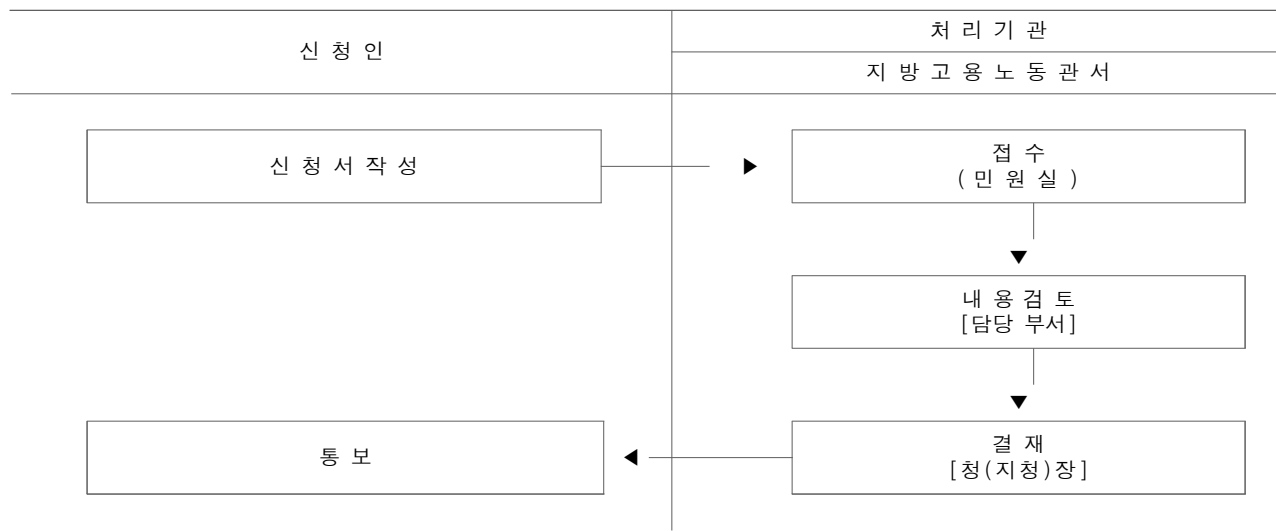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이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아 영업을 하던 중 휴업·폐업하는 경우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상호와 법인 명칭이 다를 경우 둘 다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회사의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3. ⑤란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법인 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5. ⑩란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인증 신청 기관

①상호 및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2. 직업소개사업 겸업의 유무,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가사서비스 구분 운영 방안

①직업소개사업 겸업 유무	②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가사서비스 구분 운영 방안
☐ 겸업하지 않음 ☐ 겸업(무료직업소개사업) ☐ 겸업(유료직업소개사업)	

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	
☐ 청소 및 세탁(정리정돈, 주방일 포함) ☐ 음식조리 ☐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양육·보호 ☐ 기타(직접기재:)	

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계	①고용 가사근로자 수	②고용예정인 가사근로자 수	③관리인력 수(대표자 외)

5. 사회보험 가입현황

구 분	가 입 번 호	구 분	가 입 번 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 민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국 민 연 금	

6. 자산 등의 현황

①자 산 상 황	계	현금, 예금	토지, 건물	기 타
	원	원	원	원
②부 채 현 황	계	부 채 명 세		

7. 기타 계획

--

작 성 방 법

□ 본 사업계획서는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1. 인증 신청 기관

- ①란에는 법인 명칭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다를 경우 이를 둘다 기재합니다.
- ④란에는 법인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 겸업 유무,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가사서비스 구분 운영 방안

- ①란에서 “직업소개사업” 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 제4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 ②란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되, 직업소개 방식을 통한 서비스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를 구분 가능케 할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
- 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가 항목에 없을 경우 “기타” 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서비스 종류를 직접 기재합니다.

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 ①란에는 인증 신청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본 인증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사근로자로 고용 가능한 예정 인원을 기재합니다.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인증요건 미비로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란에는 대표자 외에 고용된 관리인력의 수를 기재합니다.

6. 자산 등의 현황

- ①란에는 신청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부

※ 대표자 및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만을 적습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담당업무 (가사근로자의 경우 담당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채용 연월일

가 사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서

※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일부터 30일 이내 채용이 가능한 예정 명단을 적습니다.

제 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 상호(법인명칭):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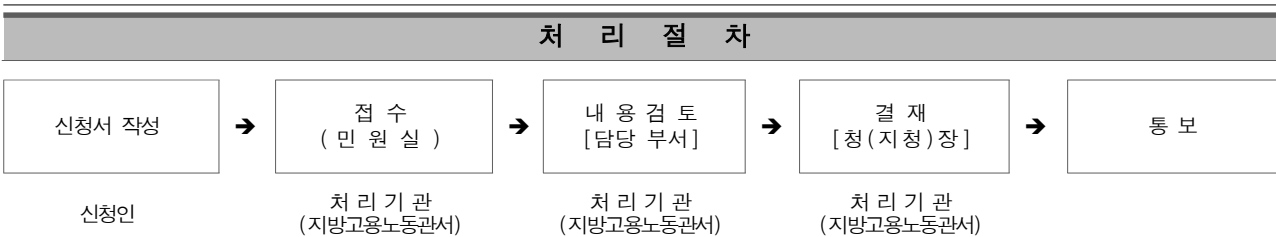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변경인증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칭)			②인증번호		
③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⑩인적사항 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일	시간	내용
1	10:00	출발
2	10:30	도착
3	11:00	점심
4	11:30	회합
5	12:00	종료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인증 신청 시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의 변경 및 추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4. 사무실 소재지 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수단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시	1. 손해배상보험 계약 갱신: 보험증서 사본 2.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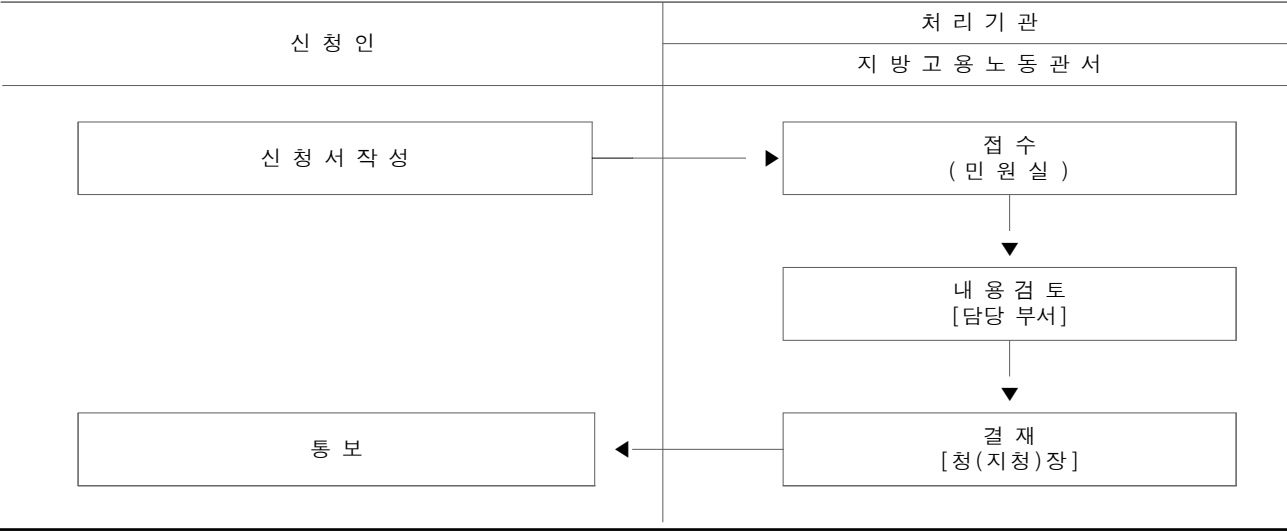
인증받은 사항 중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상호(법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휴업기간 ~ (일간)			
휴업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재개업

[]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상호(법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신고내용	[] 영업재개업		영업재개일		
	[] 휴업기간 연장		연장 휴업기간 ~ (일간)		
			휴업기간 연장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재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상호(법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요청인 (대표자)	상호(법인명칭)	인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가사근로(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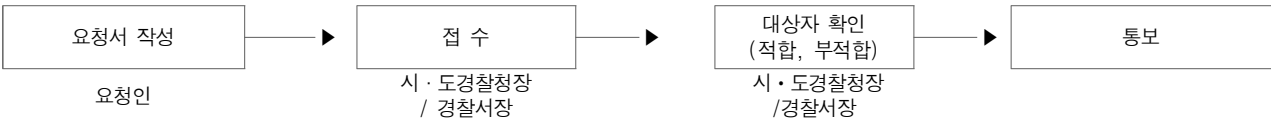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회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illegible]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요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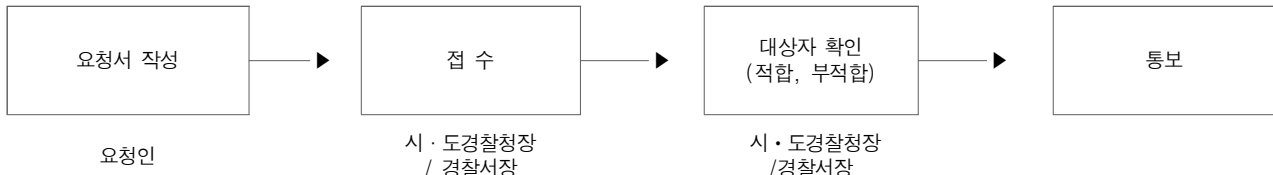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요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_____에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예정)자로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 1. 영문 성명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요청인 (대표자)	성 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결격사유 유무 여부	[] 결격사유 있음	[] 결격사유 없음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	(인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결격사유 유무 여부		[] 결격사유 있음 [] 결격사유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 2.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